

경 조 비 지 급 세 칙

2007년 1월 29일 제정 2009년 9월 9일 개정 2011년 12월 23일 개정 2012년 8월 24일 개정
2015년 4월 29일 개정 2019년 3월 13일 개정

행안	개정안																											
제1조 (명칭) 세칙은 현대위이지회(이하“지회”) 경조비 지급 세칙 으로 제정한다. 제2조 (적용대상 및 경조금) 1. 경조금 재원은 매월 조합원 1인당 1,000원씩 거출하여 지급한다. 2. 다음 경조사에 대하여 지급한다. <table><tr><th colspan="2">구분</th><th>경조금 (단위 : 만원)</th></tr><tr><td rowspan="2">결혼</td><td>본인 결혼</td><td>5</td></tr><tr><td>자녀 결혼</td><td>3</td></tr><tr><td>수연</td><td>본인 및 배우자 부모수연</td><td>3</td></tr><tr><td rowspan="5">사망</td><td>배우자 사망</td><td>10</td></tr><tr><td>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td><td>5</td></tr><tr><td>자녀사망</td><td>10</td></tr><tr><td>조부모 사망</td><td>3</td></tr><tr><td>형제자매 사망</td><td>3</td></tr><tr><td rowspan="2">기타</td><td>상병위로금(3개월 이상)</td><td>5</td></tr><tr><td>정년퇴직</td><td>10</td></tr></table> 3. 조합원 사망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1인당 3만원을 급여공제하여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3조 (조화지급) 본인, 부모, 배우자 사망 시 지회장 명의로 3단조화를 지급한다. 제4조 (경조금 신청) 경조금 신청은 경조사항 발생한 이후 지회 경조금 신청서와 경조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경조양식 제1호) 제5조 (시행) 본 세칙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조 (통상관례) 본 세칙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구분		경조금 (단위 : 만원)	결혼	본인 결혼	5	자녀 결혼	3	수연	본인 및 배우자 부모수연	3	사망	배우자 사망	10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	5	자녀사망	10	조부모 사망	3	형제자매 사망	3	기타	상병위로금(3개월 이상)	5	정년퇴직	10	제5조 (시행) 본 세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조 (제정과 개정) 세칙의 제정과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제7조 (통상관례) 세칙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구분		경조금 (단위 : 만원)																										
결혼	본인 결혼	5																										
	자녀 결혼	3																										
수연	본인 및 배우자 부모수연	3																										
사망	배우자 사망	10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	5																										
	자녀사망	10																										
	조부모 사망	3																										
	형제자매 사망	3																										
기타	상병위로금(3개월 이상)	5																										
	정년퇴직	10																										